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요건 추가 및
기타공공기관·미지정 기관의 내역 및 사유 국회 제출〉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67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요건 추가(안 제5조)	3
2.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지정 내역 및 사유 국회 제출(안 제6조)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26.

다. 회 부 일 : 2025.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가능 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지정 행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으로 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원 정원·수입액·자산규모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함에도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지정 및 공공기관의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구분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량으로 판단함에 따라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관과 직원 정원·수입액·자산규모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내역 및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직원 정원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Ⅲ. 검토의견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요건 추가(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 공공기관의 구분 - 공기업·준정부기관: <u>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u> - 기타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외 기관 <u><신 설></u>	○ 공공기관의 구분 - 공기업·준정부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u>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u> 나. <u>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가목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나 직원 정원이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으로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u> - 기타공공기관: (현행과 같음) - <u>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u>

현행법¹⁾은 공공기관을 직원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에 따라 공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²⁾에서는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유형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유형별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

유형		분류 기준		
공기업	시장형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금 관리형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미만	기금 관리 또는 위탁 관리
	위탁 집행형			정부 업무 위탁집행
기타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이러한 공공기관 분류에 따른 2025년 기준 공기업은 31개(시장형 14개, 준시장형 17개), 준정부기관은 57개(기금관리형 12개, 위탁집행형 45개)이며, 기타공공기관은 243개임.

개정안은 이러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구분 기준에 ‘수입액 및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직원 정원이 미달하는 기관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추가하고, 해당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령은 직원 정원과 총수입액, 자산규모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주체, 임원의 임명 절차 적용 여부나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 협의 대상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며, 그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음.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차이점]

구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평가	재정경제부가 경영평가 실시	주무부처가 경영평가 실시
임원	「공공기관운영법」상 임명 절차 적용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재무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 협의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출자·출연 사전 협의 대상 제외

2023년 현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이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되었는데, 이에 따라 정원 기준에 미달하는 것만으로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2023년의 경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정원 기준 300명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39개 기관 역시 정원 기준 미달을 사유로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었음. 2025년에는 대한석탄공사가 정원 기준 미달을 사유로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변경되었음.

그러나 기관의 총수입액이나 자산규모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상회함에도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들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일례로 2023년에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정원은 300명 미만이나 총수입액은 각각 4,203억원과 1,720억원으로 총수입액 기준(200억원 이상)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자산규모 역시 각각 7조 8,489억원과 3조 6,370억원으로 자산규모 기준(30억원 이상)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상황임.

또한, 사학연금공단의 경우 총수입액은 6조 2,151억원, 자산규모는 26조 9,486억원에 육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총수입액 1조 326억원, 자산규모 5조 1,984억원으로 그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조 단위로 기준을 크게 상회함에도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문제가 있으며, 대한석탄공사 역시 총수입액이 798억원, 자산규모가 8,568억원으로 상당한 규모임에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등 정원 기준이 경직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변경된 주요 기관 현황]

기관명	총수입액(억원)	자산규모(억원)	비고
부산항만공사	4,203	78,489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 ①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②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인천항만공사	1,720	36,37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2,151	269,486	
서민금융진흥원	10,326	51,984	
대한석탄공사	798	8,568	

주: 총수입액은 2021~2023년 평균, 자산규모는 2023년 말 기준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3)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기관들에 대한 재무건전성에 대한 국회 차원4)의 관리·감독도 어려운 문제가 있음.

사학연금공단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2042년에 사학연금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5)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부채비율이 2018년 29%에서 2023년 614.2%로 급증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4)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제3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5)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대한석탄공사는 2023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이고, 정부의 손실보전가능 조항이 존재하는 기관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기관으로, 이러한 기관들이 단순히 정원 미달을 사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무건전성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⁶⁾

이에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분류 기준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유형 분류 시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한 바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공공기관 유형 분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구분 요건으로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직원 정원이 미달하는 기관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유형 분류 시 수입액 및 자산규모와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6)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2025.08., 기획재정위원회) 참조

다만, 개정안 제5조제6항은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현재도 현행법 제6조제2항7)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개정안 제5조제6항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현행법은 정원, 총수입액, 자산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분류하고 있는데, 불확정 개념인 ‘재무건전성 관리·점검 필요성’을 추가하는 경우 공공기관지정제도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 ----- -----.
1. 공기업·준정부기관: <u>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u>	1.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u>
<u><신 설></u>	<u>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u>
<u><신 설></u>	<u>나.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가목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나 직원 정원이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으로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나 목에 따른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u>
<u>⑥</u> (생략)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2.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지정 내역 및 사유 국회 제출(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함. (단서 생략) -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신 설>	○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획재정부장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하나 미지정한 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내역과 사유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현행법⁸⁾은 공공기관 지정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재정경제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있음.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하나 미지정된 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내역과 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⁹⁾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총 201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34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5개, 금융위원회 소관 23개, 국토교통부 소관 21개 순인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지정 요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이나 기관별 미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음.

일례로,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회사들은 모회사인 공공기관이 지분율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행법 제4조제1항제5호¹⁰⁾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지정 요건은 충

9)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국회예산정책처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

족하고 있음.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자회사들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던 상황임.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자회사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기관명	모회사명	총수입액	자산규모	직원정원	공공기관지정유무
산은캐피탈	한국산업은행	628,171	9,537,324	258	지정 유보
KDB인프라자산운용		39,007	73,868	72	지정 유보
KDB비즈		26,710	7,551	579	지정 유보
KDB인베스트먼트		35,036	131,257	16	지정 유보
(주)IBK시스템	중소기업은행	208,070	71,143	655	지정 유보
IBK신용정보(주)		31,799	40,012	122	지정 유보
IBK연금보험(주)		1,752,799	11,352,550	186	지정 유보
IBK자산운용(주)		23,485	86,463	61	지정 유보
IBK투자증권(주)		1,881,781	7,493,826	658	지정 유보
(주)IBK캐피탈		669,330	11,036,496	265	지정 유보
(주)IBK저축은행		111,075	1,737,380	136	지정 유보
(주)IBK서비스		70,366	20,032	2,058	지정 유보
(주)IBK벤처투자		2,546	95,678	13	지정 유보
캠코선박운용(주)		3,992	13,911	8	지정 유보
(주)캠코 시설관리	한국자산관리공사	46,583	8,833	831	지정 유보
(주)캠코씨에스		6,583	2,014	135	지정 유보
예울FMC(주)	예금보험공사	3,406	920	74	지정 유보
서울보증보험		2,611,579	9,201,790	1,510	지정 유보
신보운영관리(주)	신용보증기금	9,175	2,556	287	지정 유보
에이치에프파트너스(주)	한국주택금융공사	12,253	5,545	242	지정 유보

주: 모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들 현황임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산은인프라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의 경우 본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고,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캐피탈 역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에 지정 해제된 바 있음. 재정경제부는 당시 이러한 지정 해제에 대하여 공공기관

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사유를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지정의 실익이 적은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바 있음.

또한, 모회사가 동일함에도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다른 경우에도,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바 있음.

일례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중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 KDN 등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한전FMS, 한전CSC 등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 중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반면,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나 보안관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음.¹¹⁾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분이 50% 이상인 자회사 4곳 중 한국벤처투자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중진공파트너스와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어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11)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나 보안관리는 주무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가 이들 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기획재정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함

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지정이 유보되었음.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이처럼 모회사가 동일함에도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다른 경우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바 있음.

[모회사가 동일함에도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상이한 자회사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기관명	모회사명	총수입액	자산규모	직원정원	공공기관지정여부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	534,581	945,383	2,228	지정
한전KPS		1,634,908	1,675,775	6,669	지정
한전KDN		753,310	846,360	3,021	지정
한전원자력연료		328,688	1,060,367	1,163	지정
한전MCS		161,523	94,304	4,360	지정
한전FMS		107,078	16,410	2,110	지정 유보
한전CSC		48,501	17,430	994	지정 유보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412,307	226,115	2,358	지정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34,475	10,166	871	지정 유보
코가스보안관리		16,718	4,342	422	지정 유보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6,984	148,783	163	지정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570,434	277,931	297	지정
중진공파트너스(주)		10,368.33	2,221	208	지정 유보
중소벤처기업인증원		2,975.67	3,827	20	지정 유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도로공사	343,678	105,576	5,273	지정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17,881	3,606	409	지정 유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들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가 명확한 기준 및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지정 결과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¹²⁾

이에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분류 기준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수립과 공개 등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 공개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한 바 있음.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하나 미지정된 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내역과 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 과정에서 위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투명성·예측가능성 저하 문제 및 적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재정경제부는 2024년도 결산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부터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공개한 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같이 미지정 기관의 목록 및 미지정 사유 공개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12)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2025.08., 기획재정위원회) 참조

경우, 해당 정보 공개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금년부터 미지정기관의 목록과 사유를 대외공개한 바, 소관 상임위 별도 제출의 실익이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기획재정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관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내역과 그 사유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1